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3-08호

「상주시 영양관리 조례」, 「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, 「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10일

상주시의회 의장



조례안 예고

1. 조례명

- 가.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안
- 나.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- 다. 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안

2. 조례별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

가.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안

1) 제정이유

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8조제3항에 따라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상주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) 주요내용

- 가) 조례의 목적 (안 제1조)
- 나)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(안 제2조)
- 다) 영양관리사업 및 영양·식생활 조사(안 제3조 및 제4조)
- 라) 업무의 위탁 및 관련기관·단체와의 협력(안 제5조 및 제6조)

나.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1) 제정이유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.

2) 주요내용

- 가)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)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 수립(안 제4조)
- 다) 구매자 및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)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및 설치·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및 제8조)
- 마) 충전요금(안 제9조)
- 바)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다. 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안

1) 제정이유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

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,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생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함.

2) 주요내용

- 가)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본원칙, 책무 등(안 제1조 ~ 제5조)
- 나)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,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· 시행 등(안 제6조 및 제7조)
- 다)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· 운영(안 제8조 ~ 제14조)
- 라)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 등(안 제15조 ~ 제21조)
- 마)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· 운영(안 제22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16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 · 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: why0726@korea.kr
- 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- 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7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회소식 → 공지사항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_____

성명(단체명):

주 소:

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견	비 고